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80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신성범 · 박덕흠 · 박성훈  
김예지 · 최수진 · 조은희  
김선교 · 서천호 · 엄태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② (현행과 같음)

③ -----  
-----2031년 12월 31일-----  
-----

④ -----  
-----2031년 12월 31일-----  
-----

<p>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⑥ (생략)</p> <p>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 ⑨ (생략)</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2. (생략)</p> <p>⑪ (생략)</p>	<p>-----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 <u>2031년 12월 31일</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⑪ (현행과 같음)</p>
---	---